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7. 5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7. 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20.(제12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사업과 구용대)

### 가. 제안이유

-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심의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에서 심의를 해왔는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“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“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”에서 심의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4조의2)
  - 기존 : 사하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
  - 변경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삭제  
(안 제5조 내지 제8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5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심의와 운용 등 제반사항을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토록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변경조정하고
-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확보와 능률성제고에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